

보도자료

2011년 12월 26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			
가. 시장조사과	전영만과장(2630)	나. 인터넷정책과	홍진배과장(2730)
다. 뉴미디어정책과	김정원과장(2450)	라. 뉴미디어정책과	김정원과장(2450)
마. 전파기반팀	전영수팀장(2230)	바. 전파방송관리과	송경희과장(2250)
[보고안건]			
가. 미래전파연구팀	최준호팀장(2340)	나. 와이브로팀	김경만팀장(2540)
다. 통신경쟁정책과	이창희과장(2530)		

2011년 제7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「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
(별도보도자료 참조)

○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4개 금지행위에 대한 저촉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심의한 결과,

- 방송수단 확보, 실시간 방송,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지연 금지, 자료 화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의결함

나. 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(첨부1 참조)

○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방통위가 매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,

- IPv6의 본격 확산, 신규 도메인 생성 지원, 한글 전자우편 서비스 단계적 추진, HTML5 중심의 웹 환경 구현,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재난대비 체계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의결함

다.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에 관한 건

- 강원지역 지상파DMB 수신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춘천MBC에 부과한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변경을 심의한 결과,
 - 보조국 구축 대상 지역중 일부 수신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'홍천' 등 12개국에 대하여는 기존의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('11.9.28) 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, '기린'에 대하여는 구축 계획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함

라.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건(별도 보도 자료 참조)

- 방송시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,
 - 디지털 전환 실적이 높은 SO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급 등의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, 기본채널에 대한 지급규모 확대를 일정 규모로 보장하기로 의결함 (SO-PP간 합의안)

마. 「전자파인체보호기준」(고시)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(2건)을 심의한 결과,
 -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는 전자파 제한을 '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'로 확대하고, 현행 머리 부위에만 적용되는 전자파 기준을 전신, 머리·몸통, 사지로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함

바. 470 ~ 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본계획(안) 및 공고(안)에 관한 건(첨부2 참조)

- 470 ~ 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시 발생하는 시설자의 손실 보상계획 및 재배치 공고(안)을 심의한 결과,
 - 470 ~ 806MHz대역 내에서 운용되는 DTV 방송국 중 채널변경이 필요한 885개 방송(보조)국과 700MHz 대역내 운용중인 이동방송중계용·라디오 방송중계용 및 도서통신용 7개 무선국에 대해 손실보상을 실시하고,
 - DTV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의 부품교체비용, 기타 무선국은 기존시설 철거비용을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기로 의결함

[보고안건]

가. TV 유휴대역(White Space) 활용 기본계획(안)에 관한 사항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방안,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함

나.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3 참조)

- 도서지역 통신에 대한 손실보전과 제공사업자의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보고함

다. 「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함

< 첨부1 >

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

□ 주요내용

- **(IPv6의 본격 확산)** IPv6 기반 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해 IPv6 제공 ISP수를 '11년 현재 57개에서 '14년 90개 이상으로 확대
 - IPv6 적용 및 인식제고를 위해 Korea IPv6 Day 연례적 개최 및 IPv6 종합정보제공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속적 기술지원
- **(신규 도메인 생성 지원)** 국내기업이 국제인터넷기구(ICANN)으로부터 기업명 gTLD(예: .삼성, .현대) 등 신규 gTLD 확보시 기술·행정적 지원
 - ※ **gTLD(generic Top Level Domain)**란 국가를 의미하는 .kr, .us 등의 국가도메인(ccTLD) 이외 .com, .net, .info 등 일반문자열의 도메인으로 현재 전 세계 23개 운영
- **(한글 전자우편 서비스 단계적 추진)** 국민 모두가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한글 전자우편(예: 홍길동@방통위.한국) 도입 추진
 - 국내 및 국제 기술 표준 등 기반을 조성('13년)하고, '14년 국내 포털을 중심으로 시험 서비스 이후 일반기업으로 단계적 확대
- **(HTML5 중심의 웹 환경 구현)** 차세대 웹표준(HTML5)의 확산으로 OS, 웹브라우저에 독립적인 표준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 구현
 - 웹표준 진단 테스트베드 구축 등 HTML5 확산 촉진계획 수립 및 HTML5 활성화 전략 자문위원회 운영
 - ※ **HTML5(Hyper Text Markup Language version5)** : 멀티미디어 재생, 파일처리 등을 다른 프로그램 도움없이 간단히 동작하게 하는 차세대 웹 표준 기술

- **(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재난대비 체계정비)** 호우, 정전, 해킹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보호 및 운영 연속성 확보
 - '14년까지 실시간 서비스 복구 및 3중 백업 시스템 구축, 중앙 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접근 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
 - ※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 : kr도메인, 한국도메인 및 IP주소 등 인터넷주소와 제반 정보·설비·기술 등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센터로 KISA 서초센터에 위치

- **(인터넷 거버넌스 역량강화)**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그룹 발족

< 첨부2 >

470~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본계획 및 공고안 주요내용

□ 추진개요

- 아날로그 종료 후 임시채널을 사용하는 방송국을 최종 확정채널로 옮기기 위해 채널재배치를 시행하고,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
 - ※ 주파수 재배치시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(전파법 제7조)

□ 손실보상 대상(세부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)

- (DTV 방송국) 470MHz~806MHz 대역 내에서 운용중인 1,243개 DTV 무선국 중 채널변경이 필요한 885개 방송(보조)국
- (기타 무선국) 700MHz 대역내 운용중인 기타 무선국으로 이동방송 중계용, 라디오방송중계용 및 도서통신용 7개 무선국

□ 손실보상금 산정기준(전파법 시행령 별표1)

- (DTV 대역) DTV 채널재배치는 일부 부품(필터 및 안테나 케이블 등) 교체로 채널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존 시설의 부품교체비용으로 산정
- (기타 무선국) 이동방송중계 및 라디오방송중계, 도서통신용 무선국은 부품교체로는 주파수 변경이 불가능하여 기존시설 철거비용으로 산정

□ 예산 현황

- DTV대역·700MHz대역 손실보상금 및 사업운영비로 약 **191억원** 반영 (방송통신발전기금, 국회 심의중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손실보상금		사업운영비 (KCA 위탁)	합 계
	DTV대역	700MHz대역		
소요예산	16,137	1,262	1,740	19,139

□ 470~806MHz 대역 주파수재배치 공고(안)

470~806MHz 대역 주파수재배치 공고(안)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-00호

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470~806MHz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470~806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

1. 주파수재배치 목적

-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, 470~806MHz 대역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를 470~698MHz 주파수 대역내로 재배치하고, 752~806MHz 대역에서 방송프로그램 중계 및 도서통신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를 1.7GHz 및 2.1GHz 대역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

2. 주파수재배치 대상

- 470~698MHz 대역 중 불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
- 698~806MHz 대역 중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
- 752~806MHz 대역 중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및 도서통신용 주파수

3.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

-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

4.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

- 손실보상금은 「전파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,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-25호 「손실보상금 산정기준·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」에 의함
-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(이자율)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0.00%로 함

5.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

- 해당 시설자는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 - 손실보상청구서는 「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 제2조의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함
 -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명의로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시설자별 입금계좌로 입금

6. 기 타

-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는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가능
-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의 주소·거소·영업소·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
-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(000 사무관, ☎:02-750-0000)

< 첨부3 >

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

□ 개정사항

- 보편적역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도서통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되,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의 경영효율화 도모를 위해 손실의 90%를 보전
 - 고시 제7조, 제8조에 ‘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’에 대한 내용을 반영
- 도서통신에 대한 손실보전이 도서지역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제공사업자가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함
 - “부칙” 제3조에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는 ‘도서통신서비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집행결과 및 이행계획서’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

□ 향후일정

- 행정예고, 규제심사 등 : ‘11. 12. ~ ‘12. 1.
- 위원회 의결, 관보게재 및 시행 : ‘12. 1.

<참고>

망 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

- ◆ 미국과 네덜란드, 칠레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였으며, 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에 신중한 입장으로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

1 망 중립성 규제 법제화

□ (미국) 자국의 정치, 경제상황에 따라 망 중립성 규제에 가장 적극적

- ▲ 미국의 인터넷기업(애플, 구글)이 전세계 인터넷 산업을 선도
- ▲ 인터넷접속시장이 독과점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(ISP)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이들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
 - ※ 미국의 경우 지역시장 중 80%이상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수가 1개~2개 (통신사업자, 지역독점케이블사업자)에 불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
- ▲ ISP의 트래픽 관리를 “표현의 자유”의 문제와 연계하여 ISP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존재
- ‘10. 12월 FCC, 오픈 인터넷 규칙(Open Internet Rules)을 확정 발표
- ‘11. 11월 오픈 인터넷 규칙(Open Internet Rules) 발효
 - ※ 하원의 동 규칙 폐지 결의안(‘11.4월)이 상원에서 부결(‘11.10월)됨으로써 규칙 발효
 - ※ Verizon은 FCC의 오픈인터넷규칙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(‘11.9월)하는 등 논란 지속

<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(Open Internet Rules) 주요 내용 >

원칙	내용	비고
투명성 (Transparency)	○ ISP는 광대역인터넷 접속서비스의 망관리 관행, 서비스 제공 조건을 공개하여야 함	유무선 모두 적용
접속차단 금지 (No Blocking)	○ 유선ISP : 합법적 콘텐츠, 앱, 서비스, 단말기 차단 금지 ○ 무선ISP : 합법적 웹사이트,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/영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앱(예:mVoIP) 차단 금지	유무선 차등 적용
불합리한 트래픽 차별 금지 (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)	○ 유선ISP : 합법적 트래픽 전송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(특정 이용자, 특정트래픽 차별 등) 금지 * End User의 종량요금제 및 단계별 요금제 허용 * CP에 대한 트래픽 우선 처리(Pay for Priority)나 차단하지 않는 대가로서의 수수료 부과 금지	유선에만 적용

합리적인 망관리 (Reasonable Network Managemen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ISP의 망관리 관행이 합법적인 망관리 목적달성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정 * 네트워크 혼잡 완화, 네트워크 보안, 최종 사용자가 원치 않는 트래픽(음란 등) 해결 등을 위한 관리 인정 	유무선 모두 적용
---	---	--------------

- ※ 관리형(specialized)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
- ※ 오픈인터넷규칙에서는 동 규칙이 통신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의 전송 또는 콘텐츠의 불법적 전송을 처리하는 합리적 노력들을 금지하지 않으며, 그 예로 저작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거나, 아동 포르노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

□ (네덜란드) '11. 6월 통신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차단·차별 금지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따른 차등요금 부과 금지 등 법제화

- ※ 현재 상원 계류 중이며, 동 법안으로 인한 mVoIP 차단 금지와 관련하여 통신사들이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는 등 논란이 지속

□ (칠레) '10. 8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단·차별 금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법제화(입법으로는 세계 최초)

2 망 중립성 기본원칙 제안

□ (프랑스) '10. 9월 통신우편규제위원회(ARCEP)가 트래픽 차단·차별 금지, 관리형(managed)서비스 허용 등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제안서 형태로 발표

- o 「Internet and network neutrality -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」
- ISP 뿐만 아니라 CP에 대해서도 투명성 등의 의무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며, 플랫폼 및 단말계층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 언급

□ (싱가포르) '11. 6월 정보통신개발청(IDA)이 콘텐츠 차단·차별 금지, 관리형(niche)서비스 허용 등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결정문 형태로 발표

- o 「Decision issued by IDA - Net Neutrality」

< 망 중립성에 대한 IDA의 결정문 주요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차단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수 없음 (실질적으로 접속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위, 제한, 요금부과 등을 할 수 없음)

경쟁·상호접속 규칙의 준수	○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전기통신경쟁규약에 포함된 IDA의 경쟁 및 상호접속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
정보 투명성	○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DA의 정보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고 최종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네트워크 관리 방침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로드밴드 다운로드 속도를 공개해야 함
최소 서비스품질 기준의 준수	○ ISP는 최종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브로드밴드 서비스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
니치(niche) 또는 차등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허용	○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DA의 정보 투명성, 최소 서비스품질 및 공정경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니치(niche) 또는 차등화된(differentiated)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- IDA는 향후 12~18개월간 서비스품질 요건, 정보 투명성 요건의 강화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, 의견 수렴, 해외사례 및 시장 모니터링 실시
- ※ Decision은 망 중립성에 대한 IDA의 입장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으며, 불공정경쟁행위 시 경쟁법 등 기존법령에 따라 제재

□ (노르웨이) '09. 2월 우편통신청(NPT)이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

- 「Network neutrality - Guidelines for Internet neutrality」
-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, 트래픽 차단·차별 금지,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

※ 트래픽 차단·차별 금지 등은 P2P, 아동포르노물 같은 불법적인 또는 유해한 행위의 차단, 스팸 필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

3 망 중립성 미규제 (유보)

□ (EU) 집행위원회(Commission)가 '10. 6월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

- EU 각료이사회(Council)는 '11. 12월 집행위원회 측에 트래픽 관리, 투자비 분담, mVoIP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검토를 요청

□ (영국·이탈리아) 트래픽 관리 등에 관한 의견수렴 실시 및 시장 모니터링

- 영국은 '11. 11월 「Ofcom's approach to net neutrality」 (statement)를 발표하여 망 중립성에 대한 Ofcom의 정책방향을 밝힘

- 트래픽 관리, 트래픽 차단·차별 등 망 중립성 주요 이슈에 대한 시장의 힘을 믿고 규제를 유보하며(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규제여부를 판단),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

※ '11. 3.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별 비교가 가능한 트래픽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자율적 트래픽 관리규칙(KFI, Key Facts Indicator)에 합의하고, '11.6월부터 시행

< Ofcom's approach to net neutrality 주요 내용 >

구 분	정책방향
트래픽 관리의 투명성	이용자들은 평균속도, 트래픽 관리 관행, 마케팅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* 사업자 자율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되, 제3자(reviewer, 가격 비교 사이트 등)에 의한 정보도 바람직
트래픽 차단·차별	시장 자율에 맡기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(필요 시 개입 고려) *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경쟁서비스(mVoIP 등)에 대한 차단·차별을 반드시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음
관리형 서비스	관리형 서비스와 최선형 서비스의 공존이 필요하며, 관리형 서비스에 과금을 인정함(최선형인터넷의 품질 유지 필요)